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2월 2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8년 1월 1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 최근익)

### 가. 제안이유

- 노후화 또는 불필요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며
- 기계식주차장치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자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를 지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(안 제12조)
  -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2조의5제2항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-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설치시 최소규모 지정(안 제12조)
 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
④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